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50
----------	------

제출일자 : 2020. 9. 3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2020. 8. 12. 시행예정)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신설 및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필수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2조(정의) 제2호 ‘상점가’ 추가
- 나. 제2조(정의) 제3호 ‘골목형상점가’ 정의 신설
- 다. 제2조(정의) 제4호 ‘상인’ 정의 추가
- 라. 제2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신설
- 마. 제26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신설
- 바. 제5장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및 운영·관리 규정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5) 입법예고 : 2020. 8. 5. ~ 8. 25.(의견없음)
- (6)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서를 발급한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시장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25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5조, 제26조 및 제5장(제27조부터 제29조 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조건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6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동의 철회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및 운영·관리

제2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2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27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 및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또는 구역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그에 관한 청문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1.(현행과 같음)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 -----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6. ----- ----- ----- ----- -----.
2.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하다) 제12조에 따라 <u>시장구역 내에 있는 상인들이</u>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3.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시장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신 설>	제2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조건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26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동의 철회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5장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및 운영·관리
<u><신 설></u>	제2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u><신 설></u>	제2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27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 및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또는 구역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그에 관한 청문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u>제25조(시행규칙) (생략)</u>	<u>제30조(시행규칙)(현행과 같음)</u>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7조의2, 제38조의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가.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 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意的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